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9-172호 ~ 176호(병합진행)
청 구 인 ○○○(172), ●●●(173), ◆◆◆(174), ◆◆◆(175),
▲▲▲(176)
피 청 구 인 □□학교장
재 결 일 자 2019. 12. 16.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9.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청구인 ○○○, ●●●, ◆◆◆, ◆◆◆, ▲▲▲과 피해학생은 □□학교 학생이다.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2019. 9. 2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고 한다)가 개최되어, 피청구인은 2019. 9. 30. 청구인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5시간, 부가적 특별교육 학생 2시간, 보호자 7시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0.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을 따돌림의 가해자로 단정한 후, 청구인에게 가해자임을 전제로 하는 진술서를 강요하고 학폭위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교감, 학년부장, 담임교사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5명(○○○, ●●●, ◆◆◆, ◆◆◆, ▲▲▲), 그 외 학생 3명(A학생, B학생, C학생), 총 8명의 학생들을 집단 따돌림 가해자로 단정하고 8명의 학생들을 위압적으로 협박하고 자백을 강요하면서 폭언하는 등으로 학생들의 인원을 침해하여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인권교육 권고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전담기구 설치나 따돌림에 대한 적법한 조사 없이 학폭위를 개최하였고, 청구인은 2019. 9. 25. 학폭위 참석통지서를 받았으나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9. 27. 개최된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이 이미 가해자로 확정되어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자리로 변질되었고,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가 박탈되고 방어권 행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학폭위 위원장인 교감이 연수로 인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교감은 연수 중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하여 부하 직원의 사후보고만으로 8명의 학생을 가해자로 단정하여 이들을 학폭위 개최 전날인 2019. 9. 26. 교육복지실로 불러 화를 내면서 책상을 치고 의자를 흔들며 밀치고 강제전학 보내겠다고 소리 지르고 협박하였는바, 이는 학폭위를 개최하기도 전에 8명의 학생들을 따돌림의 가해자로 단정한 후 형식적인 학폭위를 개최하였다는 반증이다.

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에 대하여 따돌림 행위를 한 적이 없고, ○○○, ◆◆◆은 피해학생과 수학학원에도 같이 다니는 사이로서 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스스럼없이 잘 어울리며 지내왔으므로, 개학 후에 따돌림 현상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피해학생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주장일 뿐이다.

라. 청구인 및 청구 외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빗을 부러뜨려 책상 위에 올려놓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 8명을 가해자로 단정하였다. **라는 가상인물도 피해학생을 빗대기 위한 호칭이 아니라 빈 책상에 붙여진 의미 없는 이름으로서, 피해학생 또한 학기 초부터 만들어진 **라는 가상인물의 호칭을 사용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9. 17.경 이 사건 따돌림 문제가 제기되자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없이 수사전문가도 아닌 학교 교감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에게 맡겨 피해학생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청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연구모임」에서 발간한

「학사모 515 Q&A」의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사실여부 확인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련 학생 또는 목격자 진술에 의한 사실 확인, 증거자료에 의한 사실 확인 등 확인 방법에 제한 규정이 없음’ 이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선생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강요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안전생활부로 찾아와 본인들이 작성한 학생확인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로 자유의사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고 작성한 날짜도 수정하였으므로, 이에 미루어 볼 때 강요에 의한 의성 없는 학생확인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에 반한다.

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3항 및 「학사모 515 Q&A」에 의하면, 안전생활부장, 학년부장, 책임교사, 담임교사 등이 실시한 사실 관계 확인 과정이 모두 전담기구 활동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설치나 따돌림에 대한 적법한 조사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에 반한다.

다. 이 사안은 2019. 6월 사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으로 2019. 6월 당시 담임교사가 관련학생 모두의 학부모들에게 사안 설명을 했고, 청구인의 학부모들이 참석통지서를 받은 2019. 9. 25. 이전에 이미 학년부장과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및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2019. 9. 27. 학폭위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가 모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은 사실에 반한다.

라. 따돌림의 유형 중 속칭 ‘은따’는 겉으로 보기엔 보이지 않는 왕따이기 때문에 물적 증거로 밝혀내기 어렵고, ‘은따’는 따돌림을 당하는 당사자가 아니면 잘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청구인은 학급의 빈자리를 ‘**’라고 지칭하는 현상에서 한결음 더 나아가 피해학생을 ‘**’로 지칭함으로써 피해학생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면서 대화를 하였다. 가해학생들 중 일부는 병원에 입원한 같은 학급 학생의 병문안을 가서 피해학생에 대한 뒷담화와 학급 내에서 피해학생을

‘**’ 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여 병원에 입원한 학생마저도 따돌림에 대해 알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했던 학생도 이 사건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아 모든 조치사항을 이행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선도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을 고려하여 판정한 결과 12점이 산출되어 6호 출석정지 조치에 해당하나, 학급 학생 19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9명이 관련된 사안으로 8명의 학생들 모두에게 출석정지를 내리는 것은 학급의 안정성 및 정상적인 학급의 유지를 현저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되었고,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자의 의견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학생확인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가해학생에게 5호 특별교육 조치를 부과, 특별교육 이수 시간은 최소 시간인 5시간만 부과하였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근거 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2019. 6. 6. 현충일에 청구인 포함 학생들(○○○, ●●●, ◆◆◆, ▲

▲▲, A학생, B학생, D학생)은 피해학생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부평으로 놀러가서 구경을 하다가 총 9명 중 3명(청구인, ○○○, ◆◆◆)이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고, 그 3명과 6명은 각각 따로 티셔츠를 구매하였다. 이후 피해학생이 위 3명에게 전화하여 합류하게 되었고, 피해학생이 위 3명에게 화를 내자 위 3명은 피해학생에게 티셔츠를 사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었다. 그 후 피해학생은 어머니가 부평 근처에 왔기에 D학생 학생에게만 먼저 간다는 말을 하고 자리를 뺐는데, D학생 학생이 이러한 사실을 일행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나머지 학생들은 먼저 간 피해학생의 행동에 화가 나게 되었다.

나. 위 부평 사건 이후, 피해학생과 청구인 포함 가해학생들과의 사이가 어색해졌고, 이를 알게 된 담임선생님이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였으나, 화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이가 어색하였다.

다. 피해학생은 개학 후 가해학생들과의 대화에 끼려고 하면 가해학생들은 대꾸하지 않고, 모둠 활동에서도 피해학생을 배제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만 이야기하여,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라. 청구인 포함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고, ‘**’ 라는 이름에 피해학생을 빗대어 **가 더럽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마. 이에 피해학생은 2019. 9. 18. 청구인 포함 가해학생 총 8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9. 27. 학폭위를 개최하여, 2019. 9. 30. 청구인 포함 가해학생들 모두에게 각각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

청구인은, 안전생활부 교사, 담임교사는 교감의 주도 하에 아무런 조사도

없이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 청구인 포함 8명의 학생들을 따돌림의 가해자로 단정하고 이들에게 가해자임을 주입시키고 가해자임을 전제로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고, 전담기구 설치나 따돌림에 대한 적법한 조사 없이 갑자기 학폭위가 개최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9. 9. 25. 학폭위 참석통지서를 받았으나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2019. 9. 27. 개최된 학폭위는 이미 가해자로 확정된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자리로 변질되어 의견진술 기회가 박탈되고 방어권 행사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이 작성한 학생확인서의 내용, 흐름을 보면, 가해학생들이 스스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가해학생들 간의 세부적인 내용, 표현방식이 각기 달라,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교감의 다소 거친 발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교감, 담임교사 등이 청구인에게 가해자임을 주입시켰다거나 진술 내용에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3항 및 「학사모 515 Q&A」에 의하면, 안전생활부장, 학년부장, 책임교사, 담임교사 등이 실시한 사실 관계 확인 과정이 모두 전담기구 활동에 포함되므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설치나 따돌림에 대한 적법한 조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학년부장, 담임교사는 학폭위 참석 통지 이전에 학생상담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학생확인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들이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보호자가 2019. 9. 27. 학폭위에 참석, 의견진술 함에 있어, 특별히 자유로운 의견 진술을 제지 또는 박탈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서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피해학생과 청구인 포함 가해학생들은 2019. 6. 6.경 있었던 부평 사건 이후 사이가 어색해졌고, 이를 알게 된 담임선생님이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하였으나, 화해 이후에도 여전히 사이가 어색하였다. 청구인 포함 가해학생들의 학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포함 가해학생 8명은 피해학생을 무시하고 피해학생에 대해 싫다고 뒷담화를 하였고, ‘**’ 라는 이름을 피해학생에 빗대어 더럽다는 등의 이야기하였으며, 피해학생을 제외하고 단독방을 만들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학생은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청구인은 학폭위 이후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자 태도를 바꾸어 학생확인서의 내용은 강요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포함 가해학생들 모두가 표현은 다르나 핵심적인 부분(피해학생에 대해 뒷담화 한 사실, 피해학생을 ‘**’에 빗대어 이야기한 사실)에서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학폭위에 참석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가해학생 8명 중 3명은 처분을 다투지 않고 모두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강요에 의한 진술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나아가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과 가해학생들의 이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따돌림에 해당하고 이는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폭위 회의록을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규정에 따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각 요소의 점수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정도로 위법

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투고 있지 않다.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심각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았고, 피해학생을 장시간 따돌림을 시켜 지속성의 정도도 높다고 보았으며, 피해학생의 상처가 커서 화해정도는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다. 학폭위에서는 합산 점수가 5호 조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해학생의 보호자도 5호 조치를 언급한 것을 고려하여, 청구인 포함 가해학생 8명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학폭위에서는 선도와 교육 목적을 고려하여 법률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위법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